

영등포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6. 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13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사업과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조(안 제5조)

라. 조직의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3년 64,607천원 예산편성

다. 타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 서울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영등포구지회가 추진하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지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지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1970. 4. 19에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노인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4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영등포구지회는 1975. 4. 1 조직되어 경로당 170 개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고 있음.

노인회의 주요사업 목적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조직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이 2011. 3. 30 제정·시행되었고 서울시는 2012. 5. 22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 지원, 노인자원 봉사단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